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개정

국방부는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2000년대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보완, '91년 8월 12일로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시 군의 요구사항 충족과 동시에 국익차원에서 경제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절차를 훈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기획 강화, 先국내개발 추진, 핵심기술·부품 개발,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 및 업체주도영역 확대를 통해 독자적 획득개발과 국방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획득전략을 반영하였다.

개정배경

훈령(국방부 훈령 제 431호)을 개정하게된 동기는 최근 몇년 동안의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여 국내외 상황변화와 예상되는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현대전으로 승리의 관건이 되고 있는 고도 첨단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90년 7월 개정된 국군조직법과 자주적 군사전략에 의한 3군 통합차원의 군사력 건설 및 군사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했던 점도 있었다.

그동안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은 최초 제정('72. 9. 8)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기본적인 절차의 큰 변화 없이 보완되어 왔다.

개정내용

● 중·장기 기획·계획 수립

기본절차의 내용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소요기획 수립절차와 이와 연동하여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획득개발계획 수립절차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전력증강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업무내용으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력증강사업을 수행해오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장기기획과 계획의 부재였다.

중·장기 획득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소요기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장기 소요기획수립은 향후 15년간의 소요를 판단한 것으로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우며, 국방정보판단과 정책에 의한 장기전략 수립은 가능하지만, 미래에 확보할 무기체계를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잘못 예측될수 있는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가지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과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을 장기무기체계 소요결정(ROC I)과 중기무기체계 선정(ROC II)으로 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동된 중·장기 획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국방업무를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단계 성숙된 업무체제를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

● 무기체계 획득방법 결정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결정 방식의 변경은 또 하나의 중요 정책결심사항으로, 종전의 자료에만 의존한 업무수행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주도적 업무수행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에 대한 획득방법별(연구개발·기술도입생산·해외구매)자료를 모두 입수하여 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해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피동적 결정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정책기준에 의거하여 먼저 획득방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자료만을 수집하여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단축하고, 과열경쟁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 등 정책주도적으로 획득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력증강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소요가 예측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획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기간내의 경제성 추구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수 있다.

● 연구개발 활성화

이와 병행하여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수행되어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업체주도로 전환하도록 연구개발 절차를 보완하였다. 이는 방산업체의 활성화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자체도 보다 한차원 높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함으로써, 필요한 전략무기의 개발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정책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병행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였다.

특히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체제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연계한 국가 산업기술 발전을 배가시키며, 국내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정착될 것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산·학·연 협력업무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훈령상에 근거를 명시하였다.

● 주계약업체 제도

지금까지 연구개발 계약은 주조립업체 개념으로 시제계약을 실시해 옴으로써, 업체 스스로 개발을 책임질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업체주도의 개발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업체제도로 개선, 주계약업체는 관련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개발하도록 개선하였다.

주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문·계열화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개발시 복수이상의 주계약대상업체간 경쟁을 통한 최적격업체를 획득심의회 의사결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도입생산시 대상장비가 단수일때에는 단일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복수일 경우 유리한 협상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체를 가능한 1:1 대응개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에서는 주계약업체로 하여금 전문·계열화된 업체로 부터 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일괄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기술도입생산 및 연구개발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도입생산은 외국에서 실용화된 장비만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실용시제 생산 및 실용시험단계를 생략하고 초도생산

으로 연결시켰다.

이에따라 업체의 생산라인 대기 및 유효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순기를 단축하여 조기전력화할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연구개발시에도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필요한 단계 부터 착수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연구개발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 및 무기체계 획득정보관리

무기체계 획득을 통해 의도적 또는 부수적으로 획득된 기술 및 무기체계 획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적 기술획득과 획득된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범국가적 활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통한 기술획득이 너무나 부진했던 점과 국내업체간의 협력 부족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중복적인 기술투자 및 국내업체간 경쟁에 의한 해외업체의 기술료 과다요구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사항

뿐만 아니라 민·관 협동체제로의 전환을 가시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업체의 건의사항과 관련자료를 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국방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 관리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맺는 말

이와 같이 개정된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은 지금까지 다소 폐쇄적이었던 무기체계 획득업무가 보다 공개적이고, 정부 단독이 아닌 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추진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저조하였던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할수 있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번 훈령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국가번영의 지름길을 확신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新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구상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번 훈령의 시행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요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타 관련부서 및 관련연구소의 협력, 특히 방산업체의 깊은 이해와 협조에 의해 소기의 목적 달성과 함께 향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